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3212
------------	------

2022년 6월 21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2. 5.25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2. 5.27.

4. 상정일자 :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17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□ 의안번호 제3212호

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안건은

- 2021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, ‘재무활동’의 83.2% 규모인 29억 8천 9백만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-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.
 -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, 수입계획 중 ‘예치금 회수’가 당초 67억 9천 5백만 원에서 97억 8천 4백만 원으로 29억 8천 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.

-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.
 -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지출계획 중 ‘예치금’이 당초 35억 9천 4백만 원에서 65억 8천 3백만 원으로 29억 8천 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.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212호,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(1)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(2) 주요내용

- 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2,989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			
일반예산(재무활동)	3,594	6,583	2,989
여유자금 예치	3,594	6,583	2,989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 계획〉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9,135	12,124	2,989
이 자 수 입 (공공예금)	156	156	0
유 리 자 금 회 수	1,983	1,983	0
예 치 금 회 수	6,795	9,784	2,989
예 자 수 회 수	201	201	0

〈지출 계획〉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9,135	12,124	2,989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	700	700	0
민 간 용 자 금	4,800	4,800	0
일 반 운 영 비	41	41	0
예 치 금	3,594	6,583	2,989

3. 검토내용

-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29억 8,9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29억 8,9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9억 8,900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-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
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83.2%, 29억 8,9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9,135	12,124	2,989	32.7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5,500	5,5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3,594	6,583	2,989	83.2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3,594	6,583	2,989	83.2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3,594	6,583	2,989	83.2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 정책 실 장애인 복지 정책 과)	41	41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 ②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2. 5.25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계정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“사회복지사업 보조, 민간융자금, 일반운영비, 예치금”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**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**, ②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, ③**행정운영 경비**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,

- 지난 '22년 4월에도 동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
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2. 6. 17.)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1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2,989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			
일반예산(재무활동)	3,594	6,583	2,989
여유자금 예치	3,594	6,583	2,989

- 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	증감
계	9,135	12,124	2,989
이자수입 (공공예금)	156	156	0
유형자산 회계예치	1,983	1,983	0
회계예치	6,795	9,784	2,989
예탁수입	201	201	0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	증감
계	9,135	12,124	2,989
사회복지 사업보조	700	700	0
민간융자금	4,800	4,800	0
일반운영비	41	41	0
예치금	3,594	6,583	2,989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김경민 (☎ 2133-7447)